

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

예천군 호명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함에 함에 있어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.

2018. 4. 23.

예 천 군 수



1. 목 적

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새벗유치원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.

2. 공고방법 : 예천군청 홈페이지(<http://www.ycg.kr>)게재

3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18. 4. 23. ~ 2018. 5. 12.(20일간)

4. 지정위치 : 붙임 참조

5. 관련근거

-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(행정예고)
- 『행정절차법』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6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(붙임2)를 예천군 건설교통과(도로담당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 : 2018. 4. 23. ~ 2018. 5. 12.

나.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 등

다. 제출서식 : 별첨2 서식참조

라. 문의 및 제출처

- 주 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(예천군청 건설교통과)
- 전 화 : (054)650-6569 / FAX : (054)650-6339

마. 기타사항

-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【붙임 2】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: 어린이보호구역 지정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예천군수

귀하

유의사항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붙임】

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위치

보호구역명	위 치 도	비 고
새벗유치원 (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01)		신규지정 L=450m